

2023년도 개정 노동관계법 안내(예원 노무법인)

1

보험료율 인상

1.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구분	기존	변경
건강보험	6.99% (사업주·근로자 각 3.495%씩 부담)	7.09% (사업주·근로자 각 3.545%씩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건강보험료의 12.81%

2. 시행일자

2023. 1. 1.자

2

최저임금액 및 산입 범위의 확대

1. 최저임금액의 인상

기존	변경
- 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1주 40시간 기준)	- 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1주 40시간 기준)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가. 산입 범위의 확대

기존	변경
- 현금성 복리후생비: 2% 초과분 -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 상여금: 10% 초과분	- 현금성 복리후생비: 1% 초과분 -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 상여금: 5% 초과분

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준의 산정

① 현금성 복리후생비: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

예시 1) 기본급이 2,800,000원이고, 식대가 200,000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 (1주 40시간 기준)

구분	금액(단위: 원)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	2,010,580원
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1%	20,106원
식대(2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179,894원
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	2,979,894원
산출 최저시급	14,258원

예시 2) 기본급이 2,100,000원이고, 식대가 100,000원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 (1주 40시간 기준)

구분	내용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	2,010,580원
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1%	20,106원
식대(1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79,894원
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	2,179,894원
산출 최저시급	10,430원

②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

예시 1) 기본급이 3,000,000원이고, 정기상여금이 500,000원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 (1주 40시간 기준)

구분	내용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	2,010,580원
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5%	100,529원
상여금(5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399,471원
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	3,399,471원
산출 최저시급	16,265원

예시 2) 기본급이 3,000,000원이고, 정기상여금이 300,000원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 (1주 40시간 기준)

구분	내용
----	----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	2,010,580원
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5%	100,529원
상여금(300,000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199,471원
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	3,199,471원
산출 시급	15,308원

3. 시행일자

2023. 1. 1.자

3 식대 비과세 인상

1. 변경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기존	변경
100,000원	200,000원

2. 시행일자

2023. 1. 1.자

4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제10조의 2)

기존	변경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를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를 사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2. 시행일자

2023. 1. 1.자

5 동포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1. 변경 내용

기존	변경
포지티브방식 (도입허용 업종 규정, 제조업·광업·농어업·건설업 및 34개 서비스업종)	네거티브 방식 (도입제외 업종 규정, 정보서비스업 등 22개 중분류 제외업종)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 시행일자

2023. 1. 1.자

6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국회 논의중

1. 주요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구분	내용
내용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 1주 12시간에 더하여 최대 1주 8시간 근로시간 연장 가능 (1주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 → 2022. 12. 31. 자 만료 예정이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국회 논의중

※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뉴스레터 또는 안내메일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변경

1. 변경 내용(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5)

기존	변경
----	----

구분	교육내용	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1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2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2. 시행일자

2023. 1. 1.자

8 건강손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보상 신설

1. 신설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14, 시행령 제34조의 2)

기존	변경
(신설)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시행일자

2023. 1. 12.자

9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 강화

1. 변경 내용 (산업안전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별표3)

기존	변경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의복 사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 (의복 사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시행일자

2023. 2. 19.자

10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1. 신설 내용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6호)

기존	변경
(신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 가입 의무화

2. 시행일자

2023. 2. 3.자

11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신설

1.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4)

기존	변경
(신설)	- 충돌위험 방지조치 (법 제221조의2) - 좌석안전띠의 착용 (법 제221조의3) - 잠금장치의 체결 (법 제221조의4)

2. 시행일자

2023. 7. 1.자

1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신설 내용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21)

기존	변경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택배 간선기사,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등 추가 직종 적용 예상) - 노무제공자 실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지급,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50% 부담

2. 시행일자

2023. 7. 1.자

13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1.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일부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 <p>*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 경비원</p>

2. 시행일자

2023. 8. 18.자

14 대체공휴일 확대

1. 변경 내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변경
3·1절	3·1절
광복절	광복절
개천절	개천절
한글날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2. 시행일자

2023년 미확정 (시행령 개정 예정)

※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추후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